##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###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##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8년 6월 7일 박봉순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6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## 2. 개정이유

- O 법규명과 담당부서의 명칭을 현행과 맞도록 변경하고
- O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공 인조례의 별지 제1호~제4호 서식을 현행화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O 법규명 현행화(안 제1조)
  -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→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

- O 담당부서의 현행화(안 제8조 및 제12조)
  - 정보화담당관 → 정보화담당부서(안 제8조)
  - 정보화담당관 → 정보화담당부서장(안 제12조)
- 별지 제1호 ~ 제4호 서식 변경
  - 주민등록번호 → 생년월일
  - 폐기자(분실자) → 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

#### 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이 「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규명칭을 변경하고,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별지 서식을 변경하며,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부서를 현행화하도록 한 것으로 조례의 현행화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